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26호 2021. 5. 13.(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73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617호 2021/2022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 2
- 사천시 공고 제636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사천시 규칙 제77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통시설”을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726 호

사천시 공고 제2021-617호

2021/2022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우리 시 「2021/2022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사 천 시 장

1. 승인조건

-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수면은 양식업(어업)면허 처분 할 수 없다.
-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견·발생되는 경우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대체개발 시 합산·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를 완료한 후 양식장(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바. 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인한 후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사. 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어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 아.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자.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 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 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식업(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카. 정치망어업은 보호구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타. 위(가~카)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양식업(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2. 2021/2022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방법)	수면 위치	면적 (ha)	승인 여부	비고
총계	1건		57.90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서포비토	27.0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16호 기간만료 재개발
		서포비토	25.9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17호 기간만료 재개발
		사천대방	5.0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60호 대체개발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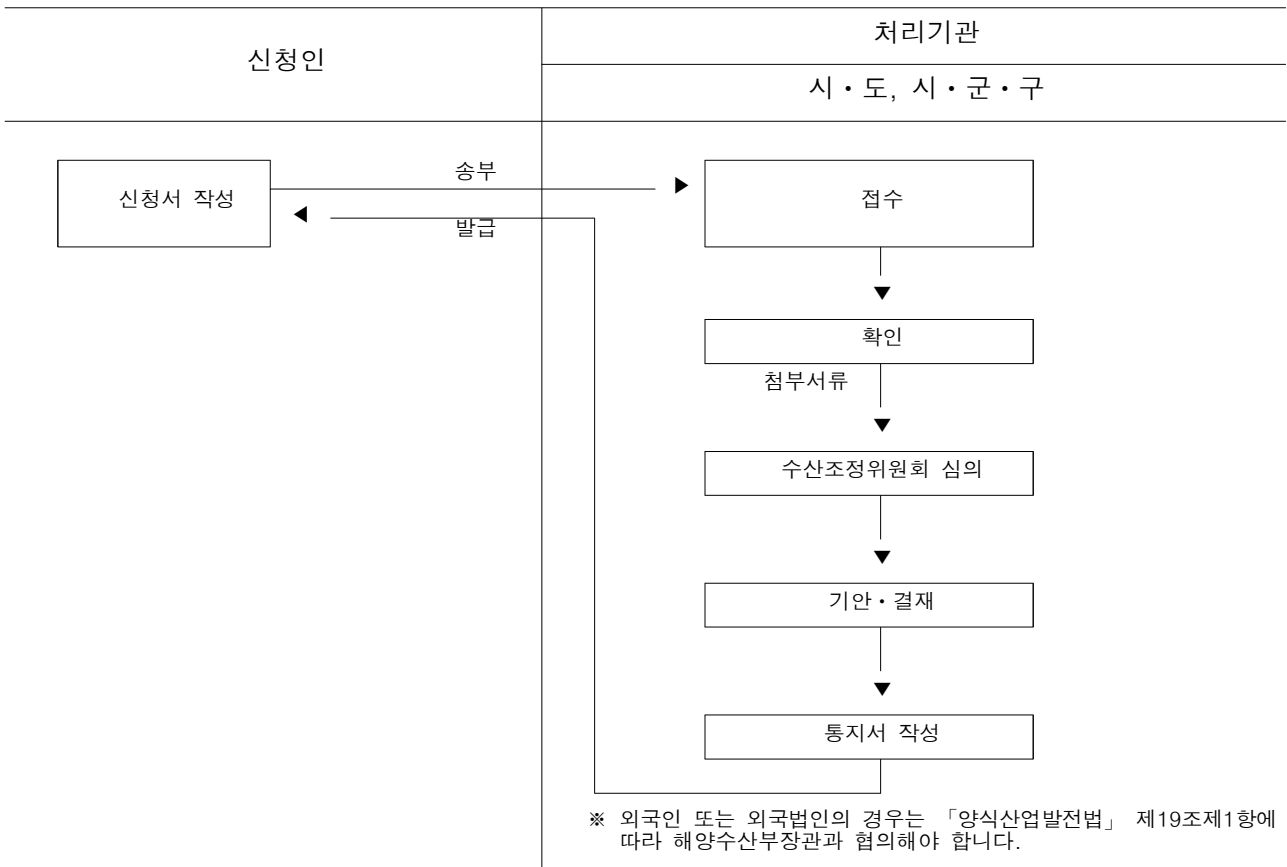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사천시 공고 제2021 -636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에 따라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서(청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사 천 시 장

1. 공고 제목: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5. 13. ~ 2021. 5. 28.(15일간)
3. 처분 대상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
사업계획승인 취소	고도산업	임*숙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256-1 외6필지	2021. 5. 10.
공장등록 취소	광남산업	강*기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686	"
"	서영	서*배	경남 사천시 향촌동 1319	"
"	대명엔지니어링	황*현, 황*균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10-14	"
"	미래이엔에스	윤*중	경남 사천시 송포공단길 46	"
"	한서정공	김*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5	"
"	천부산업	김*희	경남 사천시 송포공단길 63	"
"	(주)희주테크	박*배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공단로 21	"

사 천 시 공 보

제726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 공장이 제조시설 멸실, 폐업 등으로 부존재 또는 타 공장 가동 중이거나 입주계약 중
- 2) 사업계획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아니한 경우

5. 처분 내용: 공장등록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4항

7. 안내사항: 사천시청 산업입지과 (☎055-831-3456)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